

# 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입안 계획서

## 1. 행정규칙명

- 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 
(관세청고시 제2020-14호, '20.4.27.)

## 2. 개정 사유

- 외국 석유중개업체에 판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여 혼합(블렌딩)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하여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지원
-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활용한 반도체·디스플레이·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
-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조문 변경 내용 반영 등 용어 정비

## 3. 주요 개정내용

### □ 국산 석유제품의 반입 및 혼합(블렌딩) 후 수출 절차 신설

- 국산 석유제품을 “환급대상 수출물품”으로 종합보세구역\*에 반입하여 혼합(블렌딩)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반입확인서 발급 절차, 블렌딩 절차, 수출 절차 등 관련 절차 신설(\$25)

\* 석유제품 등을 저장하거나 혼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종합보세구역에 한정

-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
  -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상 “전략산업 특화단지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중 외국인투자금액, 수출금액, 또는 외국물품 반입물량 기준을 1/2로 완화(§6①)

□ 종합보세구역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 등 간소화

-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시 행정처리 기간 단축(90 → 30일) 및 첨부서류 축소\*로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(§4②,③)
  - \*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및 지정요건 기준(외국인투자금액, 수출금액, 외국물품 반입물량) 증명자료 제출 생략
- 견본품 반출입 내역을 정정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서식 마련(§17④)
- 원료과세 적용 신청 시 물품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 세관공무원이 선별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(§23)

□ 용어 및 조문 정비

-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따른 정비
  - 관세법 개정('11.1.1) 반영(견품 → 견본품)
  - 관련 고시 용어 반영(물품반입확인서 →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언어순화에 따른 용어 정비
  - 외래어 표기 정비(셋팅 → 세팅), 언어순화 정비(의하여 → 따라)

**4.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**

**5. 규제대상 여부 : 해당 없음**

**6. 시행일자(예정) : '24. 1. .**

**7. 의견제출**

- 제출처 :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
- 담당자 : 박종호 사무관(☎042-481-7821, park9402@korea.kr)  
이규진 주무관(☎042-481-7906, leeguj@korea.kr)
- 제출방법 : 전화 또는 이메일
- 제출기한 : '23. 11. 30.(목) 18:00